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716
------------	-----

제출 년월일 : '98. 11.

제 안 자 : 안 산 시 장

□ 제정이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을 습득케 하여 자활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근로무능력자 국가의 생활보호 조치

□ 주요골자

- 작업장은 장애인의 재활상담, 직업재활, 재활자립홍보, 지역 사회사업과의 연계등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안 제4조)
- 고용대상 장애인은 생산활동이 가능한 안산시 거주 등록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안 제5조)
- 시장은 안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장애인단체중 계약에 의해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작업장 운영비용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안 제7조)

□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 덧붙임
- 예산관련사항 : '97. 1회 추경에 확보 ('98 명시이월사업)
 - 사업비 _____ 1,773,091천원 (도비 350,000, 시비 1,423,091)
- 제정조례(안) : 붙임
- 입법예고사항 : '98. 10. 8 ~ 10. 27 (20일간)
- 기타참고사항 :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덧붙임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이하“작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안산시 초지동 604-10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작업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체계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 ①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생활보호법상의 생활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정상 작업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비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의 채용은 전체 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급여) ①제5조제1항의 고용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5조제2항의 비장애인과 기타의 작업장 종사원에 대한 급여는 채용자와 피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장애인단체중에서 계약에 의하여 작업장을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아 운영하고자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

다)는 시장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계약은 문서로써 하되, 위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 계약기간
3. 수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4. 수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 방법
5. 수탁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및 지출 방법
6.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7. 기타 수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 계약에는 작업장의 시설물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볼일 수 있다.

④수탁자는 작업장의 시설물에 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하여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체결일부터 15일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1조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작업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작업장 운영 수익금,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작업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시설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작업장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준공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산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7조제3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용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매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감독) ① 수탁자는 작업장운영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또는 철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기타 시장이 위탁운영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 ②수탁계약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수탁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부품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①작업장의 시설물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 구조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운영 규정)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조례 제10조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

-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② 제1①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716
------------	-----

제안년월일 : 1998. 12. 22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회 이하연외 6인

1. 수정이유

- 조문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보완할 점이 있어 이를 수정보완 코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 제3호 중 “자립의” 다음에 “교육 및”을 삽입한다.
- 안 제7조 제2항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탁대상자의 판단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자립의” 다음에 “교육 및”을 삽입한다.

제7조 제2항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탁대상자의 판단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4조(기능) (생략) 1. ~ 2. (생략) 3. 재활, 자립의 <u>홍보</u>에 관한사항 4. ~ 5. (생략)</p>	<p>제4조(기능) (원안과 같음) 1. ~ 2. (원안과 같음) 3. <u>교육 및 홍보에</u>..... 4. ~ 5. (원안과 같음)</p>
<p>제7조(위탁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수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u>단서 신설</u>></p>	<p>제7조(위탁운영) ① (원안과 같음) ② <u>다만, 수탁대상자의 판단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③ (생략)</p>	<p>③ (원안과 같음)</p>